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083
----------	------

2023년 9월 12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8월 14일, 고광민 의원
2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3. 상정일자 :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
(2023년 9월 12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고광민 의원)

1. 제안이유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“부패방지권익위법”이라 한다)」 및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관계 법령의 준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,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익제보위원회의 공익제보자 선정 심의·의결 사항 일부 삭제(안 제10조 제1항 제2호)
- 나.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중 “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, 노무사 등의 수입료” 내용을 “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”으로 변경(안 제13조 제1항 제3호)
- 다.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“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” 조항 신설(안 제14조 제1항 제4호 마목)
- 라.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교육기관의 재정 증대나 수입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“2년 이내” 내용을 “3년 이내”로 변경(안 제14조 제5항)

Ⅲ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고광민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083호로 발의되어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,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공익제보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였는바,

동 개정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의 법령체계에 따른 입법의 통일성을 제고한 것으로 개정취지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나. 주요 조문별 검토

1) 공익제보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- 동 개정조례안 제10조는 공익제보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중 ‘공익제보자 선정’ (제2호)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.
- 현재 동 조례안의 상위법인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(이하 ‘법’)에 서는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(제2조4호1)),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(법 제6조2))하고 있습니다.

1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~3. (생략)

4. “공익신고자”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.

2) 제6조(공익신고)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.

1.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·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

2.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(이하 “조사기관”이라 한다)

3. 수사기관

4. 위원회

5.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

- 이처럼 법에서는 다양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고적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동 조례에서는 법의 취지와 달리 ‘공익제보자 선정’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공익제보자가 지원 및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.
- 안 제10조는 공익제보 선정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함으로써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2) 구조금 및 보상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, 안 제14조)

- 안 제13조는 구조금 지원에 대한 지급대상을 ‘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, 노무사 등의 수입료’에서 ‘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범위’로 확대하고 있습니다.
 - 이는 법(법률 2021.4.20.일부개정)이 공익신고자의 피해를 줄이고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송관련 공익신고 구조금을 원상회복 관련 쟁송 비용뿐만 아니라 무고·명예훼손 등의 소송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데 따른 것입니다.
 - 따라서 안 제13조는 상위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의 동일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음으로 안 제14조는 보상금의 지급사유에 ‘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’를 신설하고, 보상금의 지급신청기한을

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서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 또한 상위법인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, 개정되어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“의견없음”을 제출하였습니다.(행정관리담당관-12681.,2023.8.22.)

[표-1] 상위법령의 규정 현황

내 용	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	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	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구조금 등 지원	제27조(구조금) ①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 1. 육체적·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. 전직·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.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<u>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</u> 4.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.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(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)	제15조(신고자등의 보호·보상) ①~⑥ (생략)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, 그 친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·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고에 관한 감사·수사 또는 조사 등에 조력한 자가 신고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7.> 1. 육체적·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. 전직·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.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등을 이유로 한 <u>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</u> 4.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.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(인가·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물품·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)	제68조(포상 및 보상 등) ①~② (생략)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,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4. 16., 2022. 1. 4.> 1. 육체적·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. 전직·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.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<u>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</u> 4.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.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(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)
보상금	제26조(보상금)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,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·보상금	제68조(포상 및 보상 등) ⑥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.
보상금 지급	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1조(보상금의 지급사유) 법		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72조(보상금의 지급사유) ①

<p>사유</p>	<p>제26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말한다. <개정 2021. 10. 19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2.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.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4.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	<p>· 구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,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신고자”는 “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”로, “신고”는 “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”로 본다.</p>	<p>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9. 10. 15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.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.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.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. 벌금·과료·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6.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
-----------	---	---	---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징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제14조제1항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마.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공익제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) ①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공익제보위원회를 둔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공익제보자 선정</u></p> <p>3. ~ 11. (생략)</p> <p>② ~ ⑨ (생략)</p> <p>제13조(구조금 등 지원) ①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교육감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, 노무사 등의 수입료</u></p> <p>4.·5. (생략)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 <p>제14조(보상금) ① 공익제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p>	<p>제10조(공익제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3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구조금 등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</u>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보상금) ① ----- -----</p>

해당하는 사항으로 교육기관의
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
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
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
교육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
청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4.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
이나 판결
가. ~ 라. (생략)

<신설>

- ② ~ ④ (생략)
-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
신청은 교육기관의 재정 증대나
수입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
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
내,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
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
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⑥ ~ ⑧ (생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
반환 등에 의한 환수
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-----

----- 3년 -----

- ⑥ ~ ⑧ (현행과 같음)